

#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8,500,000	7,755,000
일반회계	237,300,000	7,119,000
특별회계	21,200,000	636,000
기타특별회계	21,200,000	636,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92,705	206,781
수질개선특별회계	4,918,000	147,540
의료급여특별회계	578,000	17,34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100,000	33,00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416,000	42,480
치수사업특별회계	1,653,049	49,5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0	4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17,237	135,517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0,009	3,3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92,36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